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01-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35

9 772765 643006

비매품 / 무료
ISSN 2765-6438



2023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3



2023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23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3

1 사회적기업 | 개요

1 사회적기업 이해	7
2 사회적기업 연혁	10
3 사회적기업 현황	12
4 예비사회적기업	14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16

2 사회적기업 | 인증

1 인증 목적	25
2 인증 요건	25
3 인증 절차	28
4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29



3 사회적기업 | 지원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31
2 정부 지원 부문	34
3 공공·민간 기업 지원 부문	43

4 사회적기업 | 유형

1 일자리제공형	46
2 사회서비스제공형	49
3 혼합형	52
4 지역사회공헌형	55
5 기타(창의·혁신)형	58



사회적기업 현황

2022. 12월 기준



연도	신청	인증	현재 유지
계	6,243	4,222	3,534
'07	166	55	35
'08	285	166	100
'09	199	77	47
'10	408	216	127
'11	224	155	92
'12	317	142	107
'13	469	269	184
'14	481	265	194
'15	427	295	218
'16	326	265	218
'17	306	256	225
'18	372	312	286
'19	555	392	364
'20	519	429	419
'21	657	500	493
'22	532	428	425

지역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596 (16.8%)	163 (4.6%)	134 (3.8%)	209 (5.9%)	147 (4.2%)	112 (3.2%)	119 (3.4%)	619 (17.5%)	204 (5.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47 (4.2%)	144 (4.1%)	200 (5.7%)	198 (5.6%)	242 (6.8%)	182 (5.1%)	90 (2.5%)	28 (0.8%)	

설립경로별 현황 *설립경로 중복 포함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2,474*	188	66	
장애인 작업장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255	9	590	667

조직형태별 현황

비영리 726개소 (20.5%)					영리 2,808개소 (79.5%)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회 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312(8.8%)	62(1.8%)	74(2.1%)	276(7.8%)	2(0.1%)	2,205(62.3%)	168(4.8%)	121(3.4%)	314(8.9%)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2,349(66.4%)	271(7.7%)	309(8.7%)	207(5.9%)	398(11.3%)

서비스 분야별 현황

문화, 예술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건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346 (9.8%)	282 (8.0%)	349 (9.9%)	145 (4.1%)	137 (3.9%)	107 (3.0%)	83 (2.3%)	19 (0.5%)	14 (0.4%)	21 (0.6%)	10 (0.3%)	10 (0.3%)	2,011 (56.9%)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022. 12월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부처별 지정 현황

구분	교육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누계
지정 수	0	16	61	82	86	55	6	94	76	155	473	1,10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계
129	155	156	35	629	1,10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지정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128	403	118	108	40	59	70	82	132	15	30	55	98	85	70	82	96	1,67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계
342	266	583	58	422	1,671

1

사회적기업 개요

1 사회적기업 이해

1. 사회적기업이란?
2. 사회적기업의 특징
3. 사회적기업의 역할

2 사회적기업 연혁

3 사회적기업 현황

4 예비사회적기업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01

사회적기업 이해

1. 사회적기업이란?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Tip. 더 쉽게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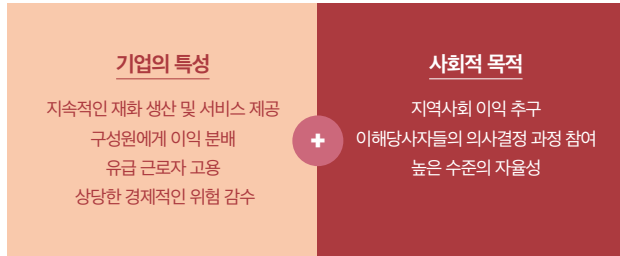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항)

Tip.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회사만 사회적기업인가?

사회적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9조: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입니다.



제 3의 경제주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3.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여 단기·저임금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한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며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가치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Tip. 일상에서 가치를 만든다,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바이소셜은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바이소셜 캠페인은 2012년, SEUK(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시민, 기업과 공공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소셜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칠 변화를 생각하는 것,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이소셜할 수 있습니다.



02 사회적기업 연혁

1945년 이후 생산자협동조합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해방 이후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나갑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각 지역 단위로 만들어졌던 의료협동조합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Tip.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등장하였나요?

유럽: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재정 지출이 축소됨에 따라 복지정책 후퇴의 위기가 오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980년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감축으로 인해 비영리기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이 요구되면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아쇼카의 창립자 빌 드레이튼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1997년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와 자활사업, 그리고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저임금 일자리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고,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출처: 전국실업극복 단체인대 외, 2005)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0년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활 정책 연구 모임과 같은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2007.1.3.)하고 시행(2007.7.1.)하였습니다.



Tip. 외국의 법제화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되던 2007년의 유럽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사회적 목적 기업(벨기에) ▲사회연대 협동조합(포르투갈)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스페인) ▲집단지 이익 협동조합(프랑스) ▲지역사회이의 기업(영국) 등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단계적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제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확대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사업개발비 지원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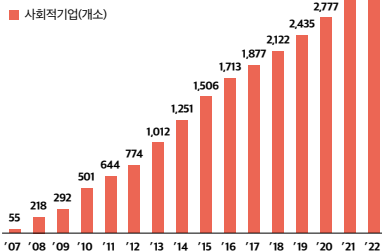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03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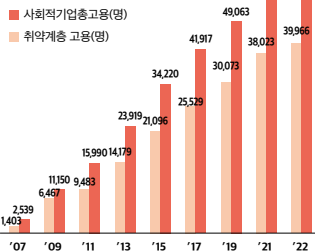
1. 양적·질적 성장

사회적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왔습니다. 2007년 5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기준 3,53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같은 경영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 기업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수 (개, 누적)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명)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기준)



Tip.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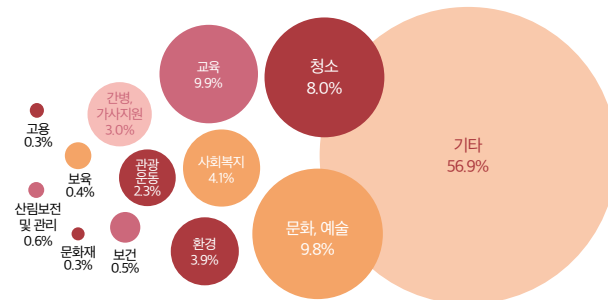
2022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66,191명에 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9,966명 (60.4%)에 달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체가 1개 기업 평균 5.4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당 평균 18.7명을 고용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2년 말 기준)

2. 외연 확장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정부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사회문제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개)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기준)



문화, 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346 (9.8%)	282 (8.0%)	349 (9.9%)	145 (4.1%)	137 (3.9%)	107 (3.0%)	83 (2.3%)
보건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19 (0.5%)	14 (0.4%)	21 (0.6%)	10 (0.3%)	10 (0.3%)	2,011 (56.9%)	

* 기타-제조·판매업, 식품업(식음료, 도시락 등), 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등) 등

예비 사회적기업

1. 제도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Tip.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요건	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부록 ●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사회적기업은 특정 가치관을 지닌 기업인가요?

A.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것은 수많은 서구 선진국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갈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업·빈곤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끝나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나요?

A. 200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증 받은 4,222개소 중에서 3,534개소가 활동 중으로 사회적기업 전체 생존율은 83.7%에 이릅니다. 인증 이후 5년 이상 계속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87.9%(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로 지속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려와 달리 사회적기업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0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불평등, 양극화, 환경파괴 등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온 과정 속에서 드리워진 그늘입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던 세상은 사회적 가치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사회적경제의 정의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①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②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③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④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OECD	EU	캐나다 퀘벡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티빙인 양도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2. 사회적경제의 특징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 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3.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되,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우리 사회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4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현황 데이터는 4~5페이지 참고

-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Tip. 협동조합 7대 원칙 (출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4. (자율과 독립)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훈련·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 어른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Tip. 협동조합 설립 과정

절차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정관 필수 기재사항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5 설립 신고/인가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사전상담 안내-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수리(인가)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말 기준)

협동조합 전국 22,132개('21.말) 설립 → 23,915개('22.말) 설립

구분	설립현황(비중)
(일반)협동조합	19,674(82.3)
사회적협동조합	4,114(17.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3(0.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5(0.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9(0.0)
총계	23,915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 수리(인가) 현황

(출처: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말 기준)

구분	총계	부산광역시	1,063
서울특별시	4,992	대구광역시	918
경기도	4,416	대전광역시	915
전라북도	1,608	충청북도	774
전라남도	1,413	인천광역시	691
강원도	1,370	울산광역시	455
경상북도	1,239	제주특별자치도	409
경상남도	1,230	세종특별자치시	216
충청남도	1,118	총계	23,915
광주광역시	1,08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처별 설립 인가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전국 3,610개('21.말) 설립 → 4,241개('22.말) 설립

구분	총계	금융위원회	6
보건복지부	1,617	방송통신위원회	6
교육부	591	질병관리청	5
문화체육관광부	332	통일부	5
고용노동부	326	외교부	4
국토교통부	291	새만금개발청	3
농림축산식품부	155	농촌진흥청	3
행정안전부	138	경찰청	2
기획재정부	123	소방청	2
연합회(일반·사회적·이종)	127	해양경찰청	2
산림청	124	법무부	1
환경부	104	국가보훈처	1
산업통상자원부	86	국민권익위원회	1
여성가족부	86	기상청	1
중소벤처기업부	67	통계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특허청	1
문화재청	10	총계	4,241
해양수산부	8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Tip. 마을기업 운영원칙 (출처: 행정안전부)

1.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2. (공공성)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3.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4.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Tip. 마을기업 지정 과정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설립요건:

구성원	설립방식	설립절차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Tip. 자활기업의 미래 (출처: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촉진
 - 자활기업 신규창업 확대
 - 수익형 자활기업 육성
 - 자활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공헌도 증대
2. 전국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육성
 -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광역,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안정적인 저소득층 고용 및 수익 창출
3. 자활기업 경영지원
 - 자활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우선 위탁 지원
 - 우수자활상품 품질인증 및 유통업체 입점 지원

- 지원요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

- ②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③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 근로일수 충족
- ④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통일성 유지
- ⑤ 교육이수
- ⑥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성과입력

부록 ● 사회적기업 정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www.ikose.or.kr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 유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발족해 현재 1,000여 개의 회원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으로 2019년 4월 발족, 9개 지역별 협의체와 3개 부문별 연합회가 참여.

·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개별법 협동조합 간 협의체.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발족해 1,400여 개 마을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지부로 구성된 협회.

· 한국자활기업협회

자활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직력을 강화하여 자활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8년 발족하여 자활기업의 대표 조직으로 12개 지역협회와 4개 업종협회로 구성, 350여개 자활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회.

시민사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www.ksenet.org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며,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http://knsec.or.kr>

Y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2011년 12월 발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책환경 개선, 시민의식 개선 등의 과제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하고 조직된 네트워크.

지원조직 네트워크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위 지원기관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임팩트얼라이언스

한국 최초의 소셜 임팩트 생태계 연대체로 2019년 9월 발족.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갖고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및 지원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현재 96개사가 회원조직으로 참여.

언론

· 머니투데이 콜머니 <http://coolmoney.mt.co.kr>

머니투데이가 운영하는 좋은 자본을 지향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사회적경제, 시민사회기금 등에 대해 다루는 웹미디어.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

조선일보 공익색선으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 공익 영역의 뉴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미디어.

· 이로운넷 <http://www.erounet.net>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미디어로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을 집중 다루는 인터넷 미디어.

·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미디어로, 사회적경제분야의 마을소식부터 글로벌 트렌드를 다루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미디어.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erl.kr/>

한겨레 미디어를 기반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경제 등을 연구하고 기획 보도하는 전문 싱크탱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NS채널

· 뉴스레터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고자 사회적경제 소식을 온라인 뉴스레터로 만들어 격주 발행. 사회적경제 이슈, 지역 소식, 우수 사례, 각종 정보 등을 담아 알차게 전달.



뉴스레터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플러스친구

국내외 사회적경제 소개, 각종 지원 정보 등을 수록하며 신속하게 전달하는 채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친구

2

사회적기업 인증

- 1 인증 목적
- 2 인증 요건
- 3 인증 절차
- 4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01 인증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①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 ② 경영 등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이 가능토록 기반 조성
- ③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육성
- ④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

02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것



Tip.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Tip.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해야 합니다. (‘19년 지침개정)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Tip. 가장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입니다. <5가지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 일자리제공형
인증 신청 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월 기준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19년 지침개정) 실적 증명 방법은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③ 혼합형
④ 지역사회공헌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



Tip.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리기업은 주주와 대표자 등 지분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지분 소유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 관계자, 외부 전문가, 후원자, 연계기업 등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회의체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Tip. “노무비의 50% 이상”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년 시행령 개정) 만약 유급근로자의 지난 6개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지난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춘 것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중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사회합자조합 등)



Tip. “사회적 목적”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회적 목적의 범위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요거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많은 아이에게 요거트를 공급하기 위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신축 공장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03.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됩니다. 심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Tip.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1.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주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3. 인증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5. 현장 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광역자치체)
7. 검토 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8. 인증 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육성전문위원회 주관)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인증서 전산발급('20.3월~))

Tip.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 및 접수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3. 심사 및 선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04.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사회적기업) 033-749-3942, (합동조합) 033-749-3920	033-749-3900	gwse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양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리동 203호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설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상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 (상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dg_secenter@cne.or.kr
대전 세종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 집 3층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금강베네치아 211호	042-624-6005 044-864-8676	044-863-8676	value@value-plus.kr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052-950-1230	051-790-1099	jiu1028@dcb.or.kr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fse@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cor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69, 3층	061-337-2110	061-334-2110	jnsi23@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발과정로 164, 6층 (발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3, 아산아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1212@gmail.com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

3

사회적기업 지원

-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 2 정부 지원 부문
- 3 공공·민간 기업 지원 부문



0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책에서는 '정부 지원 부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이 연계하여 조성된 '민간 지원 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Tip. 법률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 ②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 ③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
- ④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 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 ⑥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자문 비용 등 재정 지원

Tip. 정부가 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하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시장 또는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가치와 성과는 여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정책을 단순한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힘을 실어준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제2의 도약을 일궈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추가지원: 예비 20%, 인증 30%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내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경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1개소(21년) 	-	○
시설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사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전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8개조합, 468억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 제9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구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3인 이상(자문위원 1인 별도 포함)으로 구성된 동아리 20팀 • 150만 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제공
	소셜벤처 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대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대회 순 진행 • 국무총리상·고용노동부장관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후원사상 등 시상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자원연계, 성장지원 등 제공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용(공용) 사무공간 및 상시 상담, 교육, 자원 연계, 협업 등 지원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현안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자립 경영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 • 인증 사회적기업만 가능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 •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박람회 및 스토어 36.5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강화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확산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자금으로 소액금융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지원 	
기타	민간 자원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파트너 발굴 및 연계 지원 • 공공·민간 부문과 사회적기업간 협업 저변 확대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지원
	프로보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영 자문 또는 지역사회 협력 연계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민간·공공기관 자원 연계 지원

1.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지원사업

청년층에 소셜벤처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한 소셜벤처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동아리를 발굴하여 관련 프로젝트 실행 및 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내 3인 이상(자문위원 1인 별도 포함)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원, 워크숍 및 멘토링 캠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입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청소년/대학생/일반/글로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진행되며, 2022년까지 총 1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과정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창업팀과 예비창업팀으로 구분하여 권역·특화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합니다. 초기창업팀은 매년 말, 예비창업팀은 4월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된 창업팀에 대해서는 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교육, 자원연계, 성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 (25개소)

권역	기관명	주창업공간 주소	대표전화	
서울 인천 경기	(사)피피엘 외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4층	070-4610-5686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5층	02-330-0724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둔단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망포동, 수원영동 경기행복주택)	070-4763-0130 (내선번호3)	
강원 충청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033-650-3318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55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2번길 15, 3층	042-320-9540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아산아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내선번호3)	
대구 경북	(사)충북시민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 빌딩 5층	043-273-0335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72, 3층	053-213-307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과학생명융합대학 6호관 2403호 사회적경제지원단	053-850-4774	
부산 울산 경남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051-504-0275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울산극동방송 10층	052-700-6176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관리동 2층 203호	055-286-6379	
광주 전라 제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인성관 3층 사회적기업사업단	062-670-2794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1-0201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본관 5층 인큐베이팅실	063-711-2112-3	
교육, 청소년 지립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70-4244-9874	
	사회적협동조합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37, 열매나눔재단 빌딩 302호	02-22038-8508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8-4, 2층	043-264-9979	
문화 전남	문화예술 (서비스디자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307호	051-950-1231, 051-9501236-8
	사회서비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3길 51, 2층	070-5057-3610, 070-5057-2992
	사회서비스 (의료, 사회복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예술광장 1로 46, 로얄프라자 307호	031-362-5421
환경 (재생에너지)	환경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02-2135-1354
	환경 (재생에너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20, 3층,10호	070-4121-0705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등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센터입니다. 매년 12~1월 중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무공간, 상시 상담, 교육, 네트워킹, 협업,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지원센터는 서울1(성동구), 부산, 전북, 경기, 대전, 대구, 울산, 강원, 광주, 서울2(영등포구), 충남, 경북, 경남(김해, 진주), 인천, 전남, 제주, 충북에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Tip.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0
서울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02-3667-8407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4,5층	051-753-2501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KT목포빌딩 9층	061-247-990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 빌딩 5, 6층	063-223-2503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사옥 3, 4층	042-489-5790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튜디오아울렛 10, 11층	053-431-9821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052-276-2505
강원	강원도 원주시 삼지대길 83 삼지대학교 대학원관 1, 2층	033-748-8661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6층	062-946-2166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5층	041-549-7762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043-259-8771
경북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층, 8층	054-476-6517
경남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055-338-2760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95-4번지 경남과기대 취창업센터 2층	055-763-2690
인천	인천시 연구수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032-858-767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대학교육관 3, 4, 6층	064-749-7538

2.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원받게 됩니다.



Tip. 인건비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단, 유급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250만 원(또는 200만 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 기업부터 적용



Tip.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 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단순 경리·서무는 제외)
- ②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 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③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④ 항목 "①" 각 분야 및 경제·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경상적인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은 연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연 5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한도

구분	최대지원기간	연간 지원 한도금액	최대 지원한도금액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인종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1억원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인 종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

·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전략, 판로, 브랜딩, 마케팅, 정책자금 연계, 사회적 가치 제고와 같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컨설팅 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단독 또는 동료기업과 공동사업 방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에서 별도로 선정한 경영분야별 전문컨설턴트, 현업 전문가, 선배 사회적기업가 등과 연계하여 핵심 분야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흥원은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목적 및 추진의지, 수행방안,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별 지원합니다. 또한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쉽게 찾고 꼭 필요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 목록 및 수행이력 정보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 어떤 기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보유하여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법인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기관

- ①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한 기술, 세무회계, 인사노무 또는 홍보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생산(유통)관리, 정보통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컨설팅 전문 법인

- ② 상근 컨설턴트를 1인 이상 보유한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③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으로, 상근 컨설턴트를 1인 이상 보유한 법인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정관상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설립 목적 또는 목적 사업으로 명시한 법인

·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일부를 최대 월 50명까지, 4년간 지원합니다.



Tip.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①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②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③ 유급근로자(자책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로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④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⑥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취득세는 50%를, 재산세는 25%를 감면해줍니다.

* 소득세·법인세: 인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Tip. 왜 사회적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나요?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공급 등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 또는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상품을 먼저 고려해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초 해당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가차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ip.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품목으로는 기념품, 도시락, 찜소, 인쇄, 사무용품, 문화 공연, 각종 체험 등이 있습니다.

· 판로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공공·민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상품몰·공공구매 지원·판로정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에 입점 및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소셜벤처 운영사업과 TV홍소핑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대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전국 96개의(‘23년 4월 기준)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판로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셜벤처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 유통채널 입점요건 충족을 위한 기본·중점 상품 개선(상품 사진 촬영, 패키지 디자인 및 홍보물 개선 등)을 지원하고, · 개선 완료된 상품 대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연계 지원
유통채널 진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홍소핑, 온라인을 특별전 개최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출 지원 · 스토어 36.5 모니터링 및 운영 자문, 수발주 지원, 브랜드 홍보물, 프로모션 등 지원
판로지원 인프라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이용자 대상 공공조달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별 상품·서비스 DB 발굴 및 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원) · 판로지원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제도 개선

· 금융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금으로 중소기업(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다각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 금융 지원 세부 내용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로 통해 신청가능)

사업명	주체	내용
소액금융사업	서민금융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부지구입비·시설비·운영자금 등 용자·지원 · www.kinfa.or.kr / Tel. 1397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 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용자·지원 · www.kosmes.or.kr / Tel. 1357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 · www.kodit.co.kr / Tel. 1588-65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별 보증 운영 · www.koreg.or.kr / Tel. 1588-7365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지역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분야별 창업입문과정 등을 개설합니다.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인력의 전문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자·교육기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적기업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합니다.

Tip.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주요 교육 사업

대상	주요 사업	내용
학교, 청소년	청소년 사회적경제 봉사학습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진로 탐색 및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교육
교사	사회적경제 교원 직무연수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교수법 및 교사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사도 교육청 연계 직무연수
대학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를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학 기반 전문 교육과정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와 모의 창업 활동 등 실습 활동으로 구성된 분야별 창업입문교육
종사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을 위한 직무·업종별 교육과정
전문 인력	사회적경제 교육전문가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수법, 교안 제작, 모의 강의 시연 진행

· 프로보노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능기부뱅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지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종합 측정하여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 사업연계를 지원합니다.



Tip. SVI 측정 우수기업 지원 세부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관 표창수여	진흥원장 표창, 사회적기업 육성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가점
홍보 및 판로지원	SVI 탁월, 우수기업 블로그, 매거진 홍보 지원
지원사업 연계	민간·공공기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재정지원사업 컨설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심사 대비 피드백 제공

03

공공·민간 기업 지원 부문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공·민간 자원 연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자원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다양한 협업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협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을 지원합니다.



Tip.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와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년간의 공공과 민간 부문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기관에 맞는 맞춤형 협업 프로젝트 제안을 진행합니다. 주요 협업 유형으로는 ▲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 시설비 지원 ▲ 재능나눔(프로보노) ▲ 성장을 위한 금융 및 투자 지원 ▲ 공간 지원 ▲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협업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자원연계팀(031-697-784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2.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

· KDB나눔재단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KDB나눔재단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약 120여개를 선발해 시설설비 및 장비 구입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2년부터 진흥원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한 <ESG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HANA POWER ON 혁신기업 인턴십』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0여개 기업). 인턴십 참여자들은 인턴십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경험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됩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인턴십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후속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PC는 사회성과의 정확한 측정과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288개 SPC참여기업들은 2,389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총 456억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4

사회적기업 유형

- 1 일자리제공형
- 2 사회서비스제공형
- 3 혼합형
- 4 지역사회공헌형
- 5 기타(창의·혁신)형



01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30%가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취약계층은 어떻게 정의하나?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기업 '주식회사 동구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발달장애인 #좋은일자리 #좋은품질

도시농부를 꿈꾸던 노순호 대표는 텃밭에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막상 체험해보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가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을 가꿀 비장애인들을 모집했고, 도심농업을 매개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토대를 매칭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텃밭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작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며, 오늘날 연매출 100억 매출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오늘도 동구밭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동구밭 홈페이지 (<https://donggubat.com>)



“일자리를 구하는 일, 힘든 경험이 아닌 영감을 주는 여행으로”
#퇴역군인 #일자리연결 #멘토링

‘베테라티(Veterati)’는 2015년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라우(Daniel Rau)씨가 사업가 다이아나 차이(Diana Tsai)씨에게 재향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사회에서 종종 도외시되는 노동 인력인 참전 군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매년 약 20만 명의 군인들이 퇴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퇴역 군인 2명 중 1명은 군대를 떠난 후 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절반이 25세 이하이고 20년을 복무하는 군인은 전체 군인의 20%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퇴역 군인들은 반드시 새로운 민간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취업의 대부분이 인맥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고, 군인들은 사회에 보유했던 네트워크가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테라티는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기존 취업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퇴역군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베테라티의 특징입니다. 대기업, 정부와 연계하여 그들에게 퇴역군인이라는 인력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퇴역군인을 채용하고자 할 시 공고를 하지 않고 베테라티의 기술 플랫폼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테라티는 국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군인들이 처한 사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플랫폼에서는 멘티마다 4명 이상의 멘토가 함께하고 있으며, 98%의 멘토가 또 다시 멘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베테라티는 퇴역군인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미국인들의 가치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베테라티 홈페이지 (<https://www.veterati.com/>)

02.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가 되어야 합니다.

Tip.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위 사회서비스 외에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탄력적으로 인정

국내·외 대표 사례

국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우는 세상
'사단법인 점프'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불평등 #체인형 멘토링 #맞춤형 학습

미국에서 8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이익현 대표는 미국 이민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교육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영리단체 '점프'를 설립했습니다. 2021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단법인 점프는 청소년-대학생-사회인으로 구성된 체인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나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대학생을 매칭하며 새로운 학습의 통로를 마련해주고, 과외를 제공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이나 사회인을 연결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나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멘토

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2만여 명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재능을 기부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여 명의 사회적 멘토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지원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미지 출처: 사단법인 점프 홈페이지 (<https://jumpsp.org>)

국외

사람을 구하는 구급 의료 서비스 'Tebita Ambulance'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합니다”
#24시간 #구급차 #의료서비스

‘테비타 앰블런스(Tebita Ambulance)’는 에티오피아의 한 외과대학 부속병원의 마취 전문 간호사였던 키브렛 어베베 터프야(Kibret Abebe Tuffa)씨가 설립한 응급 구급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당시 구급차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키브렛 씨는 부상자를 병원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구조하러 가야한다고 생각해 2008년 집을 팔고 중고 구급차 3대를 마련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부터 재정 자립을 목표로했던 키브렛 씨는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SIDA)이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략 훈련 과정을 이수하며 테비타 앰블런스 사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다국적기업과 해외 공관, 외국 NGO단체 및 국외 체류자들에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응급 구조 훈련, 구급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근 지역의 24시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비타 앰블런스를 이용했으며, 2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에게 응급교육 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대표 축구팀에게도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비타 앰블런스는 현지와 외국 정부, 개발 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ISO 9001 : 2008을 인증을 획득하고, Addis Ababa Health Bureau의 허가를 받는 등 에티오피아 원거리 의료 지원 및 병원 진료를 제공하는 선두 업체로서 응급 의료 분야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테비타 앰블런스 홈페이지 (<https://www.tebitambulace.com/>)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대표 사례

국내 폐장난감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주식회사 코끼리공장'



“고장난 장난감 수리·소독하여 취약계층에게 기부”
#장난감 수리 #취약계층 기부 #페플라스틱 환경오염

매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소각 처리하는 장난감을 수거·수리·소독하여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코끼리공장은 아동복지사로서 장난감을 수리하고 순환하는 일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통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경험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는 장난감이 넘쳐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는 비용적인 문제에 부딪혀 장난감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의 재활용을 통해 장난감이 넘치는 가정과 부족한 가정에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국내 폐기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의 코끼리공장 결실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기 창업 당시,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 모델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난감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참고와 관리 인력의 부재,

장난감 수거를 위한 차량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폐 참고를 활용 해 장난감 순환 공간을 마련하면서 장난감 수리·소독을 위한 지역 주민의 활발한 봉사활동, 아동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정적인 페플라스틱, 재고 장난감 회수체계를 마련하며 고공과 매출 수준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끼리공장은 더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경제기업 과 협업을 통해 페플라스틱 장난감이 유발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코끼리공장 홈페이지 (<https://www.kogongjang.com>)

국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Koto'



know one, teach one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라”
#배움 #일 #아이들의미래

‘코토(Koto)’는 베트남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지미 팜(Jimmy Pham) 씨는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코코넛을 팔거나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노숙하거나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리의 아이들을 만났고, 식사 한 끼를 사주며 그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코토 설립을 결심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라(Know One, Teach One)’는 의미의 KOTO 기업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토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9명의 직원과 함께 샌드위치 가게로 시작한 코토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아이들과 함께 1년 만에 코토 레스토랑으로 변할 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아이를 모아 숙식을 제공하며 식당일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유명 호텔 식당에 취업하는 등 일자리를 찾아가 갈 수 있었습니다. 코토는 단순히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토를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훈련 센터와 훈련 식당을 두고 직원과 연수생, 자원봉사자, 파트너 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토는 더 많은 코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출처: 코토 홈페이지 (<https://www.koto.com.au/>)

04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둘째,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셋째,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Tip. 지역사회공헌형 유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내의 대표 사례

국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바른 먹거리 생산하는 '주식회사 아뜰리에 이화'

이화  **빵집**

청정 나주배로 만든 맛있는 베이커리

"나주 배를 활용해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나주 배 #천연 베이커리 #지역 일자리 창출

2016년 설립한 '아뜰리에 이화'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미션을 가지고 3유(우리밀·쌀, 나주배발효종, 유정란), 3무(무방부제, 무유화제, 무계량제)의 원칙을 지킨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뜰리에 이화는 지역 농가들과 협약을 맺어 건강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베이커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허기술인 천연 배 발효종이 들어간 베이커리 생산으로 나주시 로컬푸드 우수성을 알리는 등 지역

농산물 사용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채우까지 연계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이화는 이러한 지역 일자리 창출의 공로를 인정받아 나누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역사 내 매장,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등 입점하여 매출을 신장해 가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아틀리에 이화 홈페이지 (<http://www.ewhabread.com/shop/index.php>)

국외

지역 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지역의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공간지원 #예술프로젝트 #지역재생

대표적인 슬럼가로 손꼽히던 런던의 해크니(Hackney) 지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이 40% 이상 성장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죠. 바로 지역 공

동체 경제개발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덕분에입니다.

주거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해크니 협동조합은 구청에서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 달라는 요청에 100년간 임대료를 받아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사업기획서를 작성해 ‘트리오도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용자금을 얻은 해크니 협동조합은 1층에는 상가, 2~3층은 사무공간을 꾸려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혁신가,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주기 시작했고, 전체 80여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달스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예술가들과 사회혁신가들은 질 높은 예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해크니는 인기 있는 동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공간을 개발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마약 거래와 강도 발생률도 줄어들었습니다.

해크니 협동조합의 도미닉 엘리슨(Dominic Ellison) 대표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를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풀린 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함께 할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해크니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해크니를 더욱더 멋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바꿔 갈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해크니 개발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ced.co.uk/>)

05.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 사례

국내 보호 종결 청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

brother's keeper save people and save nature

"준비 없이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보호 종결 청년 자립 #벽면 녹화 #식물인테리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을 도와오던 김성민 대표는 보호 종결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찾아가 청년들의 채용을 연계하고, 취직을 시켰는데, 가장 오래 일한 친구는 3개월 남짓이었습니다. 보호 종결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서적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보호 종결 청년을 돕겠다는 뜻을 담아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를 창업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지원할 당시 교육과 조경 중 어느 하나로 사업 영역을 정하지 못해 내부 진통이 있었고, 결국 다음

해 8기 육성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벽면녹화 조성 틀 적용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비영리재단의 자립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청년에게 교육비, 주거비 등의 맞춤형 통합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는 전국 18개 보육시설 대상 벽면 녹화를 시공하고, 보육원 아동에게 식물 치유 교육 제공, 보육원 퇴소 직전 아동에게 금융 교육, 멘토링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 없이 보육원을 퇴소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보호 종결 청년들의 사회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 활동을 이어가며 보호 종결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브라더스키퍼 홈페이지 (<http://brotherskeeper.co.kr>)

BROOKLYN GRANGE

“건강하게 농사를 짓는 일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옥상농장 #수익환원 #지속가능성

일반적으로 건물 옥상은 미사용 공간으로 방치되는 편입니다. 활용한다고 해도 단순 휴게공간에 불과했던 옥상 공간이 '옥상텃밭'으로 새로운 쓰임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브루클린 그랜지(Brooklyn Grange)는 딱딱하고 잿빛만 가득한 도심 속 건물 옥상에 녹푸른 '루프탑팜(Rooftop Fa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그랜지의 세계 최대 옥상 농장에서는 매년 50,000파운드 이상의 유기농 농산물이 재배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옥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Farm to Table' 캠페인 운동 하에 지역의 레스토랑에 공급되며, 주말에 열리는 프리마켓 등에서 판매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안전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푸드 마일(Food Miles travel,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로 지구 온난화 영향 등 평가)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그랜지는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추가 수익활동을 통해 교육 및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교육파트너인 시티 그로어스(City Growers)와 함께 청소년을 초청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공간을 활용해 성인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과 요가 수업, 결혼 예식 및 지역 셰프들과의 디너 행사 등 이벤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는 브루클린 그랜인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브루클린 그랜지 홈페이지 (<https://www.brooklyngrangefarm.com/>)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3



2023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3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발행인	정현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연락처	Tel.031-697-7700 Fax.031-697-7889 www.socialenterprise.or.kr

제작/디자인 대학내일

ISSN 2765-6438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책자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